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1가단2843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22.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1. 19.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에 관한 계약을 12,466,3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66,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8. 4. 1,50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13.3%, 대출기간 2018. 8. 4.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2013. 12. 31. 500만 원을 약정 이율 연 11.9%. 대출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였고, 2021. 11. 5.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32,204,687원(= 제1 대출: 원금 1,500만 원 + 이자 9,351,635원, 제2 대출: 원금 500만 원 + 이자 2,853,052원)이다.

다. C은 2004. 8. 25.과 2005. 2. 14. 각 주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C은 2018. 1. 19. 기준으로 적극재산으로 서울 용산구 D건물 제2층 E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중 1/2 지분 약 56,000,000원 상당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및 G 등 수인에 대하여 55억 원 이상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H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19.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 이후로서 원고가 시효기산일로 기재한 2018. 7. 2., 또는 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한 2018. 8. 2., 또는 늦어도 이 사건 대출을 대손상각한 2018. 12. 28.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11. 9.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라면서 본안전 항변을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안에 관한 주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 9.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을 알았고, 2018. 8. 2. 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실, 2018. 12. 28. 이 사건 대출을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가압류 시점과 대손상각 시점에 그 전 6개월 또는 11개월 전인 2018. 1. 9.에 이뤄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 당시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이 2018. 1. 1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주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19. C과 협의이혼한 후 피고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C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적정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한 것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인수를 이유로 이를 용인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설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8. 1. 19. C와 7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같은 날 피고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준 것은 이혼 후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를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하나,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위 행위로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는 것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만 출석하였을 뿐 제2회 변론기일, 제3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3) 따라서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이상, 피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별지

목록

순번	증권번호	원제 모집계약과	계약일	계약자변경 일	총지급금	상동명
1			2004. 8. 25.	2018. 1. 19.	4,850,965원	
2			2005. 2. 14.	2018. 1. 19.	7,615,415원	

